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
	④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여부 여, 부	
	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	
	(전화번호:)	

③ 공제세액 계산내용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27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 또는 중질지 80g/m²]

작성 방법

1.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여부란④은 「해운법」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여부를 적습니다.
2. 공제금액란⑥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 「해운법」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입니다.
3. 공제금액란의 운송비용란(⑥, ⑦)은 「해운법」 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기재합니다. 단, 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출·수입에 따른 물품의 이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여야 하며,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선하증권 및 기타 서류에 기재된 구간의 운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해당됩니다.
4. ⑨ 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·농어촌특별세·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[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1)]의 ㉓ 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고,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서식)의 ㉔ 산출세액"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